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08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서일준 · 임종득 · 한지아
서천호 · 이달희 · 김상훈
김대식 · 고동진 · 정동만
김재섭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화물 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과 같은 통계 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지표는 사후적 운영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항만을 구분함에 있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운영 사무가 시·도로 이관되었으나, 항만 인프라 확충 및 개발 수요 등에 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항만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역항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

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법률 제 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발전 등”을 “지역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① (생략)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u>지역균형발전</u>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② ----- ----- ----- <u>지역균형발전</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